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질병관리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3. 00. ~ 3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8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 한다.

7.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·관리
제34조제3항 중 “79명(5급 49명, 6급 23명, 연구관 7명)”을 “76명(5급 47명, 6급 22명, 연구관 7명)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3항 중 “40명”을 “38명”으로, “6급 16명”을 “6급 14명”으로 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480”을 “48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79”를 “480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469”를 “47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운영지원과) ① (생략)	제11조(운영지원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7. <u>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·관리</u>
7.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<u>아니하는</u> 사항	8. ----- ----- <u>않는</u> -----
제34조(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	제34조(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<u>79명(5급 49명, 6급 23명, 연구관 7명)</u> 은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76명(5급 47명, 6급 22명, 연구관 7명)</u> -----
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제35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	제35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<u>40명</u> (5급 19명, <u>6급 16명</u>, 연구관 5명)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8명</u> ----- <u>6급 14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4]

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3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480</u>	<u>481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479</u>	<u>480</u>	+1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469</u>	<u>470</u>	+1
·	·	·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3